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9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소병훈·허 영·정성호

문정복 · 오세희 · 이기헌

서영석 · 안태준 · 윤건영

박 정・강선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음.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 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 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 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술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국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7조의2(예술인에 대한 연금보 |
| | 험료 지원) 국가는 예술인의 |
| |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라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
| |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
| |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
| | <u>수 있다.</u> |